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12. 15 선고 2021가단2230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정▲기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, 이원준

피고 의료법인 홍▽의료재단

변론종결 2021. 12. 1.

판결선고 2021. 12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8,657,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3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병구

별지